



종로김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03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01.1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22.

www.jongrokimbap.co.kr
sgpark67@naver.com

『종로김밥』

정 보 공 개 서

‘(주) 제이알에프앤로지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제이알에프앤로지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나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282-17(추자동)

대표전화번호 : (02)447-1154(e)

대표팩스번호 : (02)447-2140

가맹사업부 : (02)447-1154(e)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종로김밥』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주) 제이알에프엔 로지스	『종로김밥』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282-17(추자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09.29	2006.10.10 (개업년월일)	김봉환	(02) 447-1154(e)	(02) 447-2140
	법인등록번호	284211-0046295	사업자등록번호	132-81-67549	

※ 당사는 『(주)제이알푸드시스템』에서 2009년 3월 27일 『(주)제이알에프엔로지스』로 변경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대표이사	김봉환	종로김밥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282-17(추자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9.29~현재		-	(02)447-1154(e)	(02)447-2140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이사	이정현	종로김밥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282-17(추자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9.29~현재		-	(02)447-1154(e)	(02)447-2140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감사	박상규	종로김밥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282-17(추자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9.29~현재		-	(02)447-1154(e)	(02)447-214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종로김밥』 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께서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종로김밥』	-
상호	『종로김밥』 점	-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등록일자) 41-0283037(2014.03.13)
광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2,026,467	1,583,513	442,954	2,429,501	93,693	14,321
2023년	1,974,528	1,545,896	428,632	2,693,674	88,009	18,219
2022년	1,864,989	1,454,576	410,412	2,917,610	80,396	26,159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봉환	대표이사	2006.9.29~현재	대표이사	(주)제이알에프앤로지스 대표
	이정현	이사	2006.9.29~현재	이사	(주)제이알에프앤로지스 이사
	박상규	감사	2006.9.29~현재	감사	(주)제이알에프앤로지스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0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서비스표등록번호	최종권리자	존속기간만료일
 종로김밥	상표권	2014.03.13.	41-0283037	주식회사 제이알에프앤로지스	2034.03.13.

- ① 당사의 종로김밥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현재 서비스표로 등록되었으므로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 ② 따라서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종로김밥』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6년 10월 10일

(당사에서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종로김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 제이알에프엔로지스	종로김밥	김봉환	2006.9.29~현재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282-17(추자동)

3. 『종로김밥』 업종

영업표지	업종	
종로김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김밥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종로김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7	57	-	48	48	-	42	42	-
서울	29	29	-	23	23	-	20	20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	2	-	2	2	-	2	2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1	21	-	19	19	-	16	16	-
강원	2	2	-	3	3	-	3	3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1	1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종로김밥』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4	48	1	-	7	2	42
2023	57	1	-	10	2	48
2022	60	3	-	6	4	57

『종로김밥』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종로김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42	398,537	26,112	1,261,411	70,265	19,125	1,471	41곳 산정
서울	20	239,230	16,524	467,599	36,624	109,410	8,965	19곳 산정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2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16	624,607	38,316	1,261,411	70,265	120,361	14,185	16곳 산정
강원	3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①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6개월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여, 실제산정한 점포수는 서울 19개점, 인천 2개점, 경기 16개점, 강원 3개점, 전남 1개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추정매출액도출산식	비고
매출원가=당사물품공급액×(1.5~2.5) 매출액=매출원가/0.30	[1.5~2.5] →추정가맹점자점매입률 [0.30]→추정원가율

- ㉠ 매출원가를 추정시 사용된 [1.5~2.5] 는 가맹점의 자점매입률로 당사에서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 ㉡ 매출액을 산출할 때 사용한 [0.3]은 원가율이 30%라고 당사에서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 ②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종로김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종로김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42 개	4,765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종로김밥』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9쪽을 참고하십시오.

(1) 2024년도 광고선전비 내역_ 해당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적요	금액	비고
1			
	합 계	0	

(2) 2024년도 판매촉진비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적요	금액		비고
		가맹본부	가맹점	
1	신메뉴교육 및 물량지원	364	-	-
	합 계	364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평촌금융센터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	경기 안양 동안구 동안로 126	031-386-9566

- ①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평촌금융센터에 가맹계약 후 즉시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 ②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 제이알에프엔로지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③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1) 귀하가 『종로김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9,150,000원[33㎡(10평 기준)VAT포함,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VAT없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가맹점포 시장성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당사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당사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당사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기 않음	추정 금액

①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최초 가맹금 및 보증금 등>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등 반환여부	지급기한	비고
최초 가맹비	가입비	1,100,000	가맹사업시작 후 소멸	*적정 교육 참가인원인 3명을 초과하거나 피교육자의 원인으로 교육기간이 초과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비용 산출 근거에 의하여 실비를 청구할 수 있음
	영업표지사용료	1,100,000	일할로 계산하여 소멸	
	매뉴얼 등 정보제공비	1,100,000	가맹점 오픈시 매뉴얼 등 제공 및 홍보 후 소멸	
	홍보비	1,100,000		
소 계	4,400,000	-	계약체결 후 즉시	
개점전교육비	1,100,000	가맹교육실시 후 소멸		
보증금	2,000,000	-		
합 계	7,500,000		-	

②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내용과 그 내역

- ㉠ 귀하는 당사에 본 계약의 이행과 당사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이나 로열티, 손해배상액 등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이백만원(₩2,000,000원)**

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㉞ 귀하는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이유로 외상매입금 또는 기타 제비용의 지급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㉟ 당사는 본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귀하의 당사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대금지급의무 등 본 계약상의 당사에 대한 귀하의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가맹계약서 제38조상의 귀하의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 의무가 완료된 시점에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 ㊱ 귀하는 가맹계약서 제38조상의 의무를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행여부에 대한 실사 후 이상이 없을 때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 후 정산내역서와 함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VAT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000	가맹계약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가맹해지시 전액 환불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 칠백오십만원 (₩7,500,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합계	7,500,000
가맹비	5,500,000 (VAT포함)
보증금	2,000,000 (VAT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IV, V, V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개설 기준: 33m'(10평),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선택사항	16,500,000	계약금	공사 전	당사 인테리어

	(당사의 지정업체 또는 직접시공가능)	[1,650,000원/3.3㎡]	중도금 잔금	계약취소	시방서에 따라야 함
주방기기	협력업체	7,500,000	공사완료 시	상품 미공급시	
간판/어닝	협력업체	6,400,000	공사완료 시	공사 전 계약취소	▶ LED 시공시 ▶ 후렉스 시공시 4,850,000원
의탁자	협력업체	1,500,000	인도 후	인도 전	
도시가스	현지업체	1,800,000	공사완료 시	공사 전 계약취소	실측후 확정
닥트공사	협력업체	1,800,000	공사완료 시	공사 전 계약취소	실측후 확정
초도집기	협력업체	4,000,000	오픈 전	물품공급	
초도식자재	당사	3,000,000	오픈 전	1일 전	
합계			42,500,000		

※ 비고

- ▶ 인테리어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은 인테리어업체와 귀하가 협의한 날짜에 결제함.
- ▶ 해당 금액표시는 가맹점 점포의 크기 및 귀하의 선택사안에 따라 해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 합계는 귀하가 가맹점 개설을 위한 해당 내용의 단순 합계금액으로서 표시되었음.
- ▶ 당사는 귀하에게 CI 및 정보 제공하여 귀하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귀하의 요구 시 당사는 협력업체를 소개할 수 있음.
- ▶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가맹점포 시장성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상기 내역 및 금액은 당사의 경영사정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 별도사항

- ▶ 개별 인테리어 시공 시 당사의 감리는 필수사항임
- ▶ 개별 인테리어 시공 시 감리비 330,000원/3.3㎡(VAT포함)은 별도임
- ▶ 철거공사, 전면신규공사, 승압공사, 외부닥트 요구 시 별도의 추가 공사비가 청구됨
- ▶ 냉·난방기, TV, 오디오, 오토바이 등은 별도임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입지 선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되 당사가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본사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없고 누구나 당사의 교육·훈련을 받은 레시피 대로 제조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운영 및 채용 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종로김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의 가맹금 납부의 또 다른 절차규정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원, VAT별도)

명목	금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분담금	광고비×50%×A	당사	당사가 광고비 명세서를 귀하에게 통지하고 귀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광고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광고가 시행된 경우	A라고 함은 광고가 시행되는 해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전년 총매출액에서 귀하가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율을 말함
상표사용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리스료						
교육·훈련비	1,000,000	당사	교육 시작 1일전까지	교육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이 시작된 경우	
간판류임차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연이자	연 24%	당사	지급일 익일부 터 계산하여 지 급	금전지급 채무에 대 해 그 이 행을 지체 하였을 경 우		
점포환경개선 비용	상세한 내용은 28쪽 참조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비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운영 시스템 유지비용 (POS사용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 귀하는 가맹점의 운영 및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 등을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상품 등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입·출고 및 매출상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가맹점관리 프로그램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가맹점을 관리·운영하고 당사가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지도를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출입하여 관련 서

류나 비품 등을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 ㉔ 귀하는 당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제3자 등이 재판상 청구를 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과정에서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갱신이나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경우 재가맹비는 금 이백만원(₩2,000,000원)(V.A.T 포함)이며, 재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㉑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㉒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㉓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㉑ 귀하가 운영하는 『종로김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14쪽에 기재된 최초가맹금 중 가입비, 양도인이 사용한 일할로 계산된 영업표지사용료를 제외한 금액과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㉒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④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서 제49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을'은 본 계약 제6조에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갑'과 '을'은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 ① '을'은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종로김밥』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영업표지,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에게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전산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등을 반환하고, 『종로김밥』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본 계약 종료이후에도 '갑'의 상표·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갑'은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 ③ '을'이 동조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 '갑'과 '을'은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종로김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없음.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Ⅷ과 같습니다.

- ㉞ 귀하가 별첨Ⅷ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㉟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등 물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와 물품 공급의 즉시 중단 2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 가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Ⅷ과 같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의 통보방법은 문서로 진행합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김밥전문점, 분식점	가맹본부 종로김밥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소재지 기준으로 반경 2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① 당사는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②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 특정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종로김밥』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_해당사항 없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대리점			
일반소매점			
기타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_해당사항 없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

7.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①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종로김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의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당사가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귀하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나 귀하에게 천재지변 등이나 다음 각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당사나 귀하가 파산·화의 등의 신청을 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 ㉡ 당사나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당사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③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계약서 제9조 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 중 “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가맹계약서 제9조 제3항>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본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및 광고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연장 기준 등의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을'이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등록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갑'이 '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④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다음은 계약의 일반해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가맹계약서 제46조의 규정입니다.).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제5조('을'의 자격요건과 자격유지 의무)에 규정된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을'이 제16조의 가맹점 개점 승인 보류 판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제17조(영업개시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을'이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경업금지 의무), 제27조(부당한 영업 등의 행위 금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을'이 제28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내용인 규제 및 지도를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6. '을'이 제33조('을'에 대한 '물품 등'의 공급과 대금지급,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을'이 제37조('물품 등'의 공급 및 경영지원 등의 중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을'이 제42조 규정의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물품 등'을 주문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갑'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11. '을'이 본 가맹점과 동종의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사업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12. '을'이 계약체결 후 2월 이내에 타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13. '을'이 가압류, 가처분, 조세채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
14.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해지권이 유보하거나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종로김밥』 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을'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갑'에게 그 시정을 요구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㉞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㉟ 다만, **아래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47조 제4항의 규정으로 “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1.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을'이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④ 당사가 다음 표의 행위를 한 경우 귀하는 당사와 최고의 절차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영업 양도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영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이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⑤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표지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5조
○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조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①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정해진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개발팀 (02-447-1154)

③ 가맹점운영의 대리행사 또는 위탁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종로김밥』 가맹점운영의 대리행사 또는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귀하의 가맹점의 승계의 의사를 당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피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운영권 양도 승인에 관한 절차규정은 상속절차에 준용됩니다.
- ㉣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피상속인은 귀하가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귀하가 당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제반 권리를 보유합니다.
- ㉤ 피상속인이 당사의 승인을 얻어 상속을 한 경우 가맹비(개점 전 교육·훈련비는 제외) 및 계약 이행보증금은 면제하되, 개점 이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일정 및 개점 전 교육·훈련의 비용 등은 당사와 피상속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9.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① 경업금지의 범위

- ㉠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직계가족을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아니합니다.
- ㉡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 가맹계약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본 계약에 의한 영업방식 및 영업형태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제㉠항 내지 제㉡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김밥전문점 ○ 분식점 ○ 기타 당해 가맹사업과 동일한 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개발팀 (02-447-1154)

②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 당사는 『종로김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권분석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상권에 맞게 귀하와 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개발팀(02-447-1154)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권장종업원 수는 4명 이상입니다.
- ② 가맹점주의 부재 시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④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①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Quality(제품) 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판매 상품 등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정기방문 : 정기방문에 대한 빈도 및 시기는 가맹점별로 월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 수시방문 : 긴급사항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행합니다.	운영팀	
Cleanliness(청결) 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Service(서비스) 4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전화 → 주문 등 → 서비스,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Other(기타) 5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기타 사항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②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 제이알에프앤로지스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③ 관리표는 별첨Ⅲ과 같습니다.

10. 광고 및 판촉 활동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종로김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관측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관측행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
	팸플렛 등 제작	관측물 제작비용 50%	관측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은 각 가맹점의 광고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의 가맹점사업자들의 총 매출액에서 “을”이 차지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에 사전 승인을 얻어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각자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관측 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진단,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종로김밥』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1.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①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②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③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50조 (손해배상)

- ④ ‘알은 ‘갭갭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①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9p~11p 참조]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②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33㎡(10평)]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① 당사와 귀하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②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

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각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본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지정업체를 통한 공사내용확정 ○ 가맹점사업자와 본사지정업체간의 공사계약서체결 ○ 공사진행 및 종료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1년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판매촉진행사지원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02-447-1154)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02-447-1154)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종로김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점 이전 교육 시 시행되는 신규교육 프로그램 : 필수교육>

일자	구 분(교육명)	내 용	진행자	비 고
1일차	점포운영 관리	운영관리,접객서비스,청소매뉴얼	운영팀장	
	상품교육	상품구성,물류시스템,수발주시스템	상품팀장	
	세무교육	부가세/소득세 신고 실무,기장관리	관리팀장	
2일차	조리교육	부문별 조리교육	교육팀장	
3일차	조리교육	부문별 조리교육	교육팀장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위 표 개점 이전 교육 프로그램 참조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개점 4일전까지 교육 완료	필수 교육
보수 교육 ¹⁾	조리교육	실습교육	-	발생 시 필수교육

1) 보수교육은 조리장 등(주방 및 김밥 조리인력)의 조리인력 교체 시 귀하는 조리인력의 보수교육을 당사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종로김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24	무료(당사 지원)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6	1,100	교육 건당 비용발생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9조에 따라 개점 이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 승인이 불가하고 가맹계약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해당없음

별첨 I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Ⅲ 가맹점관리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Ⅳ 인테리어 설비 등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V 주방기기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Ⅵ 초도집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Ⅶ 원·부재료 등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Ⅷ 판매상품리스트 및 권장소비자가격

김밥 Kimbap 	종로 김 밥	4,000	참치와사비김밥	5,500	식사 Rice dishes 	김치볶음밥	8,000	꼬막비빔밥	10,000
	치즈 김 밥	4,500	돈가스김밥	5,500		새우볶음밥	8,000	비빔 밥	8,000
	김 치 김 밥	4,500	매콤제육김밥	5,500		해물볶음밥	8,000	돌솥비빔밥	8,500
	샐러드김밥	4,500	소불고기김밥	5,500		낙지볶음밥	8,500	돌 솥 알 밥	8,500
	고 추 김 밥	5,000	진 미 김 밥	5,500		치킨커리볶음밥	8,500	김 치 찌 개	8,000
	어 목 김 밥	5,000	새우튀김김밥	5,500		장조림볶음밥	8,500	차돌된장찌개	8,500
	참 치 김 밥	5,500	모 돔 김 밥	6,000		카 레 덮 밥	8,000	순두부찌개	8,000
						제 육 덮 밥	8,500	부 대 찌 개	9,000
						불고기마요덮밥	8,500	육 개 장	8,500
						랩달오징어덮밥	9,000	뚝배기만두탕	8,500
				매콤낙지덮밥	9,000	뚝배기불고기	9,000		
				매콤새우덮밥	9,000				
분식 Noodles & Tteokbokki 	신 라 면	4,500	우 동	6,000	Pork Cutlet & Omelet 돈가스 & 오므라이스 	돈 가 스	9,000	돈가스덮밥	9,000
	떡 라 면	5,000	돌솥해물우동	7,500		치즈돈가스	9,500	오므라이스	9,000
	치즈 라 면	5,000	카 레 우 동	7,000		고구마돈가스	9,500	돈가스오므라이스	10,500
	만 두 라 면	5,500	돈가스카레우동	8,500		스노우치킨가스	9,500	새우튀김오므라이스	10,500
	해물팜팡라면	6,000	새우튀김카레우동	8,500					
	떡 볶 이	6,000	쫄 면	7,000					
	라 볶 이	7,000	물 냉 면	7,000					
	오 덩	5,500	비빔 냉 면	7,000					
	칼 국 수	7,000	해물볶음우동	7,500					
	육개장칼국수	8,500							
만두 Dumplings 	고 기 만 두	5,000	마 라 만 두	6,000	계절메뉴 Summer Food 	콩 국 수	8,500	열 무 냉 면	8,500
	김 치 만 두	5,000	떡 국	6,500		냉 메 밀	8,500	열무비빔국수	8,500
	군 만 두	5,000	만 듯 국	7,500		새우튀김모밀	10,000	열무비빔밥	8,500
	갈 비 만 두	5,500	떡 만 듯 국	7,000		열 무 국 수	8,500		

물은 셀프서비스입니다.



별첨 Ⅸ 가맹점사업자 연평균 매출액(2023년) 산정방식 및 근거자료
별도로 첨부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

본인은 (주) 제이알에프앤로지스의 『중로김밥』 정보공개서 제공을 받았으며 이에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일시 : 년 월 일

수령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제공자 : (주) 제이알에프앤로지스 (印)

-----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본사보관용)

당사는 (주) 제이알에프앤로지스의 『중로김밥』 정보공개서 제공하였으며

이에 **가맹희망자** 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일시 : 년 월 일

수령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제공자 : (주) 제이알에프앤로지스 (印)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개발팀(02-447-115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 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 또는
 - ②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jongrokimbap.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